

검 토 보 고 서

충청북도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설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정일하

충청북도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발의자 : 장선배 의원 등 7인

2. 발의 및 회부일자

가. 발의일자 : 2017년 11월 20일

나. 회부일자 : 2017년 11월 22일

3. 제안이유

미세먼지로 인한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도와 사업장의 책무를 정하고, 환경보전계획 수립 시에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에 일조 방해,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추가(안 제3조)

나. 도의 책무 중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4조)

다. 사업자의 책무에 미세먼지 발생 저감을 위한 사항 신설(안 제6조)

라. 환경보전계획 수립 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11조)

마. 인용 법률 조문 수정(안 제12조, 안 제13조)

바. 기타 용어 정비 등(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안 제7조, 안 제12조
부터 제19조까지, 안 제21조, 안 제25조, 안 제26조)

5. 검토내용

가. 조례개정의 필요성

- 전국에서 상위권에 속하는 높은 수준의 미세먼지로부터 충청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대기환경 질의 개선에 기여하고자 미세먼지 예방과 저감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됨.

나. 조례내용의 정당성 및 법 적합성

-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중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라고 볼 수 있으며,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할 책무를 규정함에 따라,
- 충청북도 내 미세먼지 농도가 나날이 심각해져 도민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많은 현 시점에서 충청북도와 사업자에게 각각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책무와 미세먼지발생 저감을 위한 사업장 환경개선, 화석연료 사용량 감축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정하였음.

- 또한 환경보전계획 수립 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지원계획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미세먼지 저감관련 시책이 계획적이고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은 상위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
- 입법예고('17. 11. 8.~'17. 11. 13.)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입법예고결과 특이사항은 없음.

다. 조례내용의 기술적인 사항

- 조문의 표현은 조문 상호간에 상충되는 내용은 없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간결하고 알기 쉽게 표현하였음.

6. 검토의견

「충청북도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미세먼지로 인한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도와 사업장의 책무를 정하고, 환경보전계획 수립 시에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